고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(의안번호 제73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2. 20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2. 2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3. 25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하게 하고 포상대상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○ 제9조제2항 중 "인사위원회"를 "공적심사위원회"로 하고

○ 제9조의2에 "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"을 신설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포상조례중 포상절차를 명백히 하고 포상 적격자 선발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동 조례를 개정 보완 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2. 3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